보건복지부	보 도 참 고 자 료			
배 포 일		2019. 3. 28. / (총 7매)		
질병정책과 (호스피스)	과 장	김 기 남	전 화	044-202-2510
	담당자	김 지 영		044-202-2517
생명윤리 정책과 (연명의료)	과 장	하 태 길	전 화	044-202-2940
	담당자	김 보 람		044-202-2942

3월 28일부터 연명의료결정법 개선되어 시행된다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대상 확대, 환자가족 범위 조정 등 개정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3.28.)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이하 **'개정 법령'**)을 **3월 28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호스피스·완화의료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의료행위

○ 이는 지난 해 연명의료결정법이 두 차례 개정('18.3.27, '18.12.11.)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하위법령에 마련한 것이다.

○ 3월 28일부터 개정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되어 **의료현장 등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적용이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개정된 연명의료결정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법 제2조제4호, 시행령 제2조)

- **연명의료**의 **정의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술**을 **추가***하여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

(기존) 4가지 시술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

(개정) 4가지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

※ 체외생명유지술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 확대에 따른 관련 서식* 정비**

*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의 연명의료 관련서식에서 의사 또는 환자가 작성해야하는 칸, 내용 등을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변경

②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 확대(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

- **'말기환자'**의 **대상 질환*** 제한을 **삭제**하여, **연명의료계획서 작성대상**(질환과 관계없는 모든 말기환자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을 **넓힘**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 **호스피스대상환자**를 소정의 질환*에 해당하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함

* 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그밖에 부령으로 정하는 질환

③ 환자가족 범위 조정(법 제18조제2항)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 모든 직계혈족에게 연명의료 중단 동의를 받아야 하던 것을, **촌수의 범위를 좁힘**

(기존) 배우자 및 모든 직계혈족

▼

(개정) ①. 배우자 및 1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존비속, ③. ②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형제자매

④ 호스피스전문기관 이용 말기환자의 임종과정 여부 판단절차 간소화 (법 제16조제2항)

< 임종과정 여부 판단 >

(기존)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이 함께 판단

▼

(개정) 기본원칙 : 담당의사 + 해당 분야 전문의 1명, 호스피스전문기관 : 담당의사 1명 판단 가능 허용

⑤ 환자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시행령 제10조제1항 제1호)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 최소화

⑥ 환자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확대(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제22조, 제25조)

- 가족관계증명서 이외에도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서류는 다양한 현실을 고려,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힘**

□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개정 법령 시행**을 계기로 연명의료제도를 이용하는 **국민께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제도 운영상황을 세심하게 파악하고, **바람직한 임종문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붙임 >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개념
2. 법령 개정 관련 주요 질의답변

< 별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붙임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개념('19.3.28. 현재)

< 용어의 정의 >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만을 연장하는 것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결정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으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판단을 받은 환자

○ **(말기환자)** 암 등의 질병에 걸린 후 적극적 치료에도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 >

○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에 관한 환자 의사 확인 방법**

환자 상태	확인 방법
환자의 의사 능력이 있을 때	· 연명의료계획서(말기·임종기 환자 작성 가능) · 사전연명의료의향서(원하는 사람 작성가능) + 담당의사의 확인
환자의 의사 능력이 없으나,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을 때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2인 이상의 일치하는 진술 + 의사 2인의 확인 * 가족 : ①배우자 ②직계 존·비속 ③ 형제자매(①②없는 경우) * 환자 가족이 1인뿐인 경우, 1인의 진술로도 가능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고,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도 없을 때	· 환자가족 전원의 합의* + 의사 2인의 확인 * ①배우자, ②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 ③2촌 이내의 존속·비속(①②없는 경우), ④ 형제자매(①~③없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경우,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의 결정 + 의사 2인의 확인

○ **(이행 결과의 보고)**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야 함

붙임2 법령 개정 관련 주요 질의답변

Q1. 연명의료대상 시술이 확대된다는데,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정 전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 개정 후에는 체외생명유지술(ECLS)*,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및 그 밖에 담당의사가 환자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되어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 다만,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시 통증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공급, 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유보·중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 체외생명유지술: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Q2.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대상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이때 말기환자는 법령 개정 전 4개 질환(암,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간경화)에만 제한되었지만, 이제 질환에 관계없이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모두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말기환자와 임종기환자의 정의는 법 제2조를 참조

Q3. 환자가족의 범위는 개정 전과 어떻게 달라지나요?

○ 개정 전 환자가족범위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으로 촌수의 제한이 없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가 포함되었습니다.

○ 그런데, 개정 후에는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배우자, 1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우선 해당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2촌 이내의 직계 존속·비속'이, 이에 해당하는 사람도 없는 경우 '형제자매'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Q4. 해당 환자의 가족을 확인하는 서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 과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만을 요구했으나, 개정이후에는 제적 등본 등 "해당 환자의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합니다.

Q5. 법령 개정 전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등록했는데, 이번에 연명의료 범위가 확대되었다 들었습니다. 다시 작성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말 그대로 미리 자신이 향후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면, 연명의료를 받지 않고 싶다는 뜻을 기록한 문서입니다. 따라서 연명의료에 관한 뜻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항목을 다시 작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 항목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향후 작성자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이 정말 필요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면 담당의사가 다시 확인할 것입니다.